

제41회 영주시의회(정기회)
제 3 차 운영 위원회
'99.12.27(월) 상임위원회 활동후

의안

- 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
의 범위에 관한 조례 증개정조례(안)

운영 위원회

영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.
제출자 : 조용희 의원의5인

1. 개정이유

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면동장이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 기관의장인 읍면동장을 추가함 (안 제2조제4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(발췌) 1부

영주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 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·과장과
동일직급 이상인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[영주시의회에 출석 ·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(증개정조례안)]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·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~3 <생략></p> <p>4. 소속 행정기관 <삽입>의 소속공무 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·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</p>	<p>제2조(범위)</p> <p>1~3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및 하부행정기관</p>

관 련 법령 (발췌)

■ 지방자치법

제 3 절 소속 행정기관

제104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·교육훈련기관·보건진료기관·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05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06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07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 4 절 하부 행정기관

제108조 (하부 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
의안검토보고서

<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>

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김인순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의안

- 의안번호 : 제97호
- 의안명 :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- 발의자 : 조용희 의원외 4인

2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가.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함
- 나.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함
- 다.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함
- 라.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, 숙박비를 10퍼센트 인상함

4. 검토의견

본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,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,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하는 안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며,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 및 숙박비도 현실화된 여비금액인상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2000. 1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인순